

전주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재나10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고(준재심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준재심원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4. 3. 13.

판 결 선 고 2024. 4. 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2가단1390 판결 준

재심대상조서 전주지방법원 2022나6426 사건의 2022. 11. 17.자 조정조서

주 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항소취지 및 준재심 청구취지
 1. 청구취지피고(준재심원고, 이하 ‘피고’)는 원고(준재심피고, 이하 ‘원고’)에게,
 -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 나.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2022. 2. 1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준재심 청구취지전주지방법원 2022나6426 사건의 2022. 11. 17.자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 대상조서’)를 취소한다. 적절한 판결을 구한다.

N

이 유

1. 이 사건 준재심 대상조서의 확정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며 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390로 제기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22나6426), 항소심 계속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2. 11.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준재심 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0.까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조정조항 제1항).
2. 만일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를 지체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2023. 1.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조정조항 제2항)
3.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조정조항 제3항).

2.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요지

이 사건 조정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준재심 대상조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열람한 내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중요한 부분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한 재심사유는 제한적열거적이며, 그 각 재심사유의 문언에 기초한 합리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는 재심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법에서 열거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중 판결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하자를 예상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716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 대상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 밖에 피고가 조정기일에 참석한 이상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 정한 30일의 불변기간을 넘어 2023. 3. 7. 제기한 소로 부적법하며, 피고의 주장을 선행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에 정한 다른 준재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 고연금, 판사 송인우

별지